SHEET NO. 인연변 변 호				+ F -
ତି				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
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			조경기준 충족	제7조(조경 기준)
DATE AND 2022. 01  NAME OF DRAWING EMPTY DRAWING		4.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, 관리사무소,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		
		2. 술입문 또는 정문은 내무 또는 외무도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. 3.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채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		2. 지역공동체(커뮤니티)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.
CHECKED BY ALARRROVED BY		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.		1.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, 휴게시설, 놀이터 등의 시설 (이하 "외부시설"이라 한다)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DRAWN BY	대상 아님.	제13조(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)	대상 아님.	제6조(활동의 활성화 기준)
m		계획하여야 한다.		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, 보도,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MECH. BY		2.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.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		분
ARCH. BY 건축설계		제9포(영영영포적되기가 한대한 열시) 1.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		제3포(항역장 폭포의 기준) 1.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	착공시 반영	아 내 내	대상 아님.	제5조/여여서 화비이 기조)
		3.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, 빛이 재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.		2. 네이 축 단국론의 콘립포트 립드중에이끌로 필시하여 시단국으로 통제하고,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3.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.
		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 설치하여야 한다.		경꾸에는 영장정도저리기기, 만사경 등 사연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대지 미 커类무이 축이기는 저그룩제시선으
		제8조(조명 기준) 1. 출입구,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.	도로변에 접하여 자연적 감시 가능	제4조(접근통제의 기준) 1.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. 다만,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
NOTE VI A	기 준 반 영 사 항	0学 7	0 <u>요</u> 수	71
ı			판매점)	제3조(적용대상) 1.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(일용품 단
TEL: 031)935–5780  FAX: 070)4324–5045  E-Moil: Namuarc@Naver.com  PROJECT TILE  B A B B A B B B B B B B B B B B B B B			제61조의3에 따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	제1조 (목적)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6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,건축설비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나무 건축사 사무소				년 사 기 자